

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3) 저작권

February 27, 2026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지난 해에 선고된 중요 판례 및 당해 연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될 주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025년도에 선고된 판결 중 1) 특허, 2)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권, 4)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및 5) 2026년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는 그 세 번째 순서로 저작권에 관한 2025년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

1.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경우 구 저작권법 제 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재생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은 고용계약에서 합의한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본소),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3. 북미 구전 노래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만든 미국 작곡가인 원고가 한국 동요 ‘아기상어(상어가족)’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1.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경우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재생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 판시 내용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탕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등 참조).
- 피고 매장 운영자가 제공받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대상 음원파일이다.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 판결의 해석

[사건의 배경]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판매용 음반’의 경우 청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와 같은 저작권법 문언이 영리적 목적의 공연이더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판매용 음반을 대가 지급 없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칫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간 이를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일명 ‘스타벅스’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일명 ‘하이마트’ 판결)).

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위와 같은 판시에 기초하여 2020년경부터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대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의 재생 역시 ‘판매용 음반’의 재생이 아니어서 공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와 같은 여러 업종 기업에 대한 다수의 소송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본 판결의 쟁점 및 판단] 피고 운영 매장은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원파일을 제공받아 음원을 재생하였는데, 피고는 위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므로 이를 재생하는 것 역시 공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여 제공받은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이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피고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기존 판시를 유지하면서, '매장음악서비스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음원파일'은 '시판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에 관하여는 매장운영사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추가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 본 판결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구 저작권법 제29조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과거 대법원 판결례를 비롯하여 여러 해석상의 논란이 존재해 왔는데, 2016. 9. 22.자로 저작권법 제29조의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본 판결에 따른 해석론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당시 저작권법 제29조가 개정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서 징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영업 형태 등을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역시 함께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상업용 음반'의 사용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매장 내에서 음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생하는 음반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각 매장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체결한 이용허락계약에 '공연권' 허락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준거법은 고용계약에서 합의한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본소),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 판시 내용

-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등 참조).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업무종사자’라 한다)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의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본 판결의 해석

[사건의 배경] 원고는 미국·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스케이트보드이자 예술가로 유명 디자인 도안을 창작한 자인데, 피고(국내 의류업체)가 해당 도안을 의류·관련 상품 및 광고물 등에 사용하자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쟁점 및 판단] 원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도안에 의거하여 제작하였다고 인정된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문구를 광고물 등에 사용한 행위 및 원고 성명과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한 행위에 대하여는 각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아)목 위반이 인정되었는바,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원심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 A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고용계약에서는 ‘본 계약은 미국 와이오밍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laws the State of Wyoming)’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사와 B사(참가인)는 음악 제작 작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용역계약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B사 제작 앨범의 커버 아트워크를 제작하였으며, 쟁점 도안이 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B사는 ‘해당 도안이 A사의 업무상 저작물이고, 용역계약에 따라 B사가 A사로부터 쟁점 도안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때 원심은 저작권의 성립 및 저작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이 모두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라고 판단한 다음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기초할 때 해당 용역계약 등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관하여는 작성의 기초가 된 업무상 관계인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야 하므로, 저작권 귀속, 즉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초 고용계약에서 준거법으로 합의한 미국 와이오밍주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의의

글로벌한 창작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창작자, 라이선시(Licensee)가 되는 사업자, 사업 내지 계약의 양수인 등이 각기

다른 국가 소속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준거법 및 관할 역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0조상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 이전 가능 여부, 저작권 이전 내지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그러나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저작권의 대세적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에 대하여는 해당 저작물을 작성한 근로자와 체결된 고용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해당 고용계약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이 있다면 그 합의된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실무적 시사점

본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한 법률상의 요건 등은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준거법 및 권리 귀속,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이 역시 본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3. 북미 구전 노래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만든 미국 작곡가인 원고가 한국의 동요 ‘아기상어(상어가족)’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 판시 내용

-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원심은 제1심법원의 감정축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2001년 구전가요’ 등이 포함된 구전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라 한다)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전가요의 가락, 화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본 판결의 해석

[사건의 배경] 미국 작곡가인 원고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이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불리던 구전 가요를 바탕으로 ‘베이비 샤크(Baby Shark)’라는 곡을 음반으로 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한국 회사로, 같은 구전가요를 바탕으로 2015년경 ‘아기상어(상어가족)’(피고 곡)를 제작해 피고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이후 뮤직비디오도 제작·게시했는데, 피고 곡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한 유아 교육용 콘텐츠 음악인 ‘상어가족’에 관한 사건으로, 구전 가요나 민요 등을 원저작물로 하여 창작하였을 때 어느 범위까지 개변이 이루어져야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을 때, 이것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등 참조).

이에 원심에서는 원고 곡이 과연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증감이 이루어져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에 관한 법률적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진행되었는바, 해당 감정 결과에서는 (i) 원고 곡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동반 반주/편곡 요소)가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ii) 원고 곡의 반주는 동일·유사한 반주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만 일렉트릭 기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 등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원고 곡은 기존에 있었던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원심 법원은 ‘원고 곡이 미약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창작적인 표현을 구성하였다고 볼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가정적인 판단도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거관계(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의거관계는 (i)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ii) 접근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대상 저작물과 기존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 곡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접근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거관계를 부정하였는바, 이러한 의거관계의 유사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판시 내용이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인 이 사건 구전가요에 바탕을 둔 것임에 다름이 없는 원고와 피고의 곡 사이에 의거관계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공통적 요소인 이 사건 구전가요에 있는 창작적 표현과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표현 부분, 나아가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는 원·피고 곡 양자 모두에서 소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표현과 아이디어는 동일한 원저작물에서 기반하여 작성된 표현물들 안에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서로 같거나 충분히 비슷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물들 사이에 불거진 2차적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원저작물 관련 부분을 의거관계의 유사성 심리 범위에 포함할 경우, 의거관계 추정사실로서 유사성의 독자적 의미 및 그 증명 부담은 빛이 바래고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나52763 판결)”

■ 본 판결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2차적저작물’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지만, 어문저작물의 경우 각본의 영상화 내지 번역·각색·수정, 미술저작물의 경우 일부 변형을 통한 재창작·수정, 음악저작물의 경우 편곡 내지 리메이크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각 유형에 따라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음악저작물의 경우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주의 추가 정도나 멜로디나 편곡의 변형 수준이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본 판결은 그에 관하여 원심의 감정 결과를 원용하여 ‘새로운 반주’가 추가되어야 하고, ‘동일·유사한 반주를 기본으로 약기만 추가된 것은 창작적 요소를 추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원저작물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당사자가 원저작물에 기초해서 창작물을 만든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들은 태생적으로 서로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의거관계의 유사성은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과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표현 부분 및 아이디어를 모두 소거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향후 원저작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2차적 창작물들 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

- | | |
|-------------|---------------------------------------|
| • 임보경 변호사 | T. 02-316-4041 E. bklim@shinkim.com |
| • 임상혁 변호사 | T. 02-316-4055 E. shim@shinkim.com |
| • 윤주탁 변호사 | T. 02-316-4404 E. jtyoon@shinkim.com |
| • 이진희 변호사 | T. 02-316-4328 E. jhelee@shinkim.com |
| • 김우균 변호사 | T. 02-316-4083 E. wgkim@shinkim.com |
| • 김충녕 변호사 | T. 02-316-4092 E. cnykim@shinkim.com |
| • 주석호 변호사 | T. 02-316-1759 E. shjoo@shinkim.com |
| • 황지원 변호사 | T. 02-316-1799 E. jwhwang@shinkim.com |
| • 유예지 변호사 | T. 02-316-7282 E. yjyu@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